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4년 4월 30일 (화) 오전 9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릉로 569길 19 주식회사 세나테크놀로지 8층

3. 회의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방의중(Euy Jong Bang) 선임의 건
 - 제2-2호 의안: 사외이사 전성한 선임의 건
 - 제2-3호 의안: 사외이사 정병도 선임의 건
 - 제2-4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주영준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동선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명)
 - 제4-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전성한 선임의 건
 - 제4-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정병도 선임의 건

4.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가. 직접행사: 본인 신분증(주주명부 확인)
- 나.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위임인(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위 임 장

본인은 _____ 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2024년 4월 30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주주)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유 주식 수:			
	위임 주식 수:			
연 락 처:				
위임받는자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위임장 제출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위임인(주주)의 인감증명서 첨부 필수

2024년 4월 15일

주식회사 세나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김 태 용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

[별첨 1.] 정관 변경(안) 신규조문비교표

- 상법 제433조에 의거하여 정관 변경을 위한 승인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⑥,⑦,⑧,⑨ (생략)</p>	<p>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⑥,⑦,⑧,⑨ (현행과 같음)</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다른 일부 개정</p>
<p>제24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② (생략)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p>	<p>제24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다른 일부 개정</p>
<p>제26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생략)</p>	<p>제26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가 출장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자를 의장으로 하되, 위임이 없는 경우 제2항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p>	<p>일부 개정</p>
<p>제34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둘 수 있다.</p>	<p>제34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p>	<p>코스닥 상장을 고려한 일부 개정</p>
<p>제37조 (임원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u>부사장, 전무, 이사</u>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p>	<p>제37조 (임원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u>부사장, 전무, 상무</u> 등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p>	<p>일부 개정</p>
<p>제38조 (이사의 직무) <u>부사장, 전무, 이사</u>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동일한 직위 안에서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8조 (이사의 직무) <u>부사장, 전무, 상무</u>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동일한 직위 안에서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일부 개정</p>

<p>제39조 (이사의 의무)</p> <p>①,②,③ (생략)</p> <p>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제39조 (이사의 의무)</p> <p>①,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일부 개정</p>
<p>제41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p> <p>① (생략)</p> <p>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제41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일부 개정</p>
<p>제43조 (이사회 의사록)</p> <p>① (생략)</p> <p>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제43조 (이사회 의사록)</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일부 개정</p>
<p>제 44 조 (위원회)</p> <p>①,② (생략)</p> <p>③ (신설)</p>	<p>제 44 조 (위원회)</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일부 개정</p>
<p>제 6 장 감사</p> <p>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삭제)</p> <p>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신설)</p>	<p>제 6 장 감사위원회</p> <p>제48조 (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p> <p>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p> <p>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p> <p>④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라 감사 관련 조항 삭제</p> <p>감사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p>

	<p>제49조 (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p> <p>①제48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p> <p>제50조 (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p> <p>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p> <p>제51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p> <p>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p> <p>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p> <p>④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⑤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p> <p>⑥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⑦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제52조 (감사록)</p> <p>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제55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p> <p>① (생략)</p> <p>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⑤,⑥ (생략)</p>	<p>제55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⑤,⑥ (현행과 같음)</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일부 개정</p>

제56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u>감사는</u>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u>감사위원회는</u>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에 다른 일부 개정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4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감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6장 개정 규정은 이 정관 시행 이후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첨 2.] 이사 선임 후보자

○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방의중 (Euy Jong Bang)	1967.02.23	사내이사	-	-	이사회
진성한	1972.05.19	사외이사	-	-	이사회
정병도	1975.04.11	사외이사	-	-	이사회
주영준	1975.12.28	기타비상무이사	-	최대주주의 임원	이사회

○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방의중 (Euy Jong Bang)	(주)세나테크놀로지 수석부사장	1993 1988 - 1994 1998 - 현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동성상운 대표이사 세나테크놀로지 경영관리부부장	해당사항 없음
진성한	법무법인 린 변호사	1996 2002 2017 -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제41회, 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해당사항 없음
정병도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2010 2013 - 2016 2024 - 현재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h.D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조교수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정교수	해당사항 없음
주영준	(주)카카오게임즈 투자전략실 실장	2002 2005 - 2014 2018 - 현재	단국대학교 고분자공학부 졸업 다음커뮤니케이션 전략투자팀장 카카오게임즈 투자전략실실장	해당사항 없음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방의중 (Euy Jong Bang)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진성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병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주영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별첨 3.]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후보자

○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동선	1975.10.28	사외이사	해당	-	이사회

○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동선	이촌회계법인 회계사	2002 2006 - 2018 2018 - 현재	중앙대학교 경영학 졸업 금융감독원 이촌회계법인 회계사	해당사항 없음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동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별첨 4.]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전성한	1972.05.19	사외이사	-	-	이사회
정병도	1975.04.11	사외이사	-	-	이사회

○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전성한	법무법인 린 변호사	1996 2002 2017 -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제41회, 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해당사항 없음
정병도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2010 2013 - 2016 2024 - 현재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h.D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조교수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정교수	해당사항 없음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전성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병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